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60
----------	------

발의연월일 : 2021. 2. 24.

발 의 자 : 강준현 · 강득구 · 김민석
김승원 · 김진애 · 김희재
남인순 · 박영순 · 윤건영
이수진 · 최혜영 · 홍성국
황운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 플랫폼을 통한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이 이 법에 도입되고, 당초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사망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등 적법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음(2021. 5. 13. 시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시 단속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범칙금만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단속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2대 이상이 줄지어 통행하여 교통상의 위험

을 유발하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제도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규정을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동 위험행위 또는 약물의 영향에 따른 비정상적인 운전예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를 “자동차등의”로 한다.

제148조의2제1항 중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5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78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56조제11호 및 제12호 중 “자전거등을”을 각각 “자전거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

려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1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u>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u>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u>자동차등</u> ----- ----- ----- ----- ----- ----- ----- ----- ----- ----- -----.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u>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u>자동차등의</u> ----- ----- ----- ----- ----- ----- ----- ----- ----- ----- -----

된다.

② (생 략)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 략)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

② (현행과 같음)

제148조의2(벌칙) ①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자
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

제150조(벌칙) -----

-----.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개인형 이

2. ~ 7. (생 략) 법률 제178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10. (생 략)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 에 취한 상태에서 <u>자전거등을</u>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 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u>자전거등</u> <u>을</u>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하 다) 13. (생 략) <u><신 설></u>	<u>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u> <u>외한다)</u> 2. ~ 7.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8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56조(벌칙)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u>자전거를</u>----- ----- 12. ----- ----- ----- ----- -----<u>자전거</u> <u>를</u>----- ----- 13. (현행과 같음) 14. 제45조를 위반하여 <u>약물로</u> <u>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u> <u>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u> <u>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u> <u>람</u>
---	--

<u><신 설></u>	<u>1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u>
--------------------	---